

# 과천 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 인지세 납부 안내

##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

-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서는 인지세법상 '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'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(전매 포함)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.
- 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 따라서, 인지세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**계약대상자께서는 정당 계약 진행 시 필히 "전자수입인지" 구입 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**

과세대상	납부기한	기재금액	비고
부동산 분양계약서	계약체결일	분양대금(총 공급대금)	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
분양권 전매계약서	명의변경 승인일	실제 거래가격 (분양대금+프리미엄)	

※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.

## 세액

기재금액	세액
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	20,000원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40,000원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70,000원
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50,000원
10억원 초과	350,000원

## 가산세 : 기간별 최대 300% 부과(관련법령 : 국세기본법 제47조4 제9항, '21.1.1부터 적용)

기간	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	3개월 초과 6개월 이내	6개월 초과
가산세	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	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	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##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: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, 우체국, 은행

구분	온라인	오프라인
구입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	우체국, 은행
구입방법	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② 종이문서용 "전자수입인지" 클릭 ③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④ 구매 클릭 후 납부정보 입력 - 용도 : 인지세 납부 - 과세문서 종류 : 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- 금액 :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- 매수 : 1매 ⑤ 결제(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) ⑥ 출력 ⑦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	① 인근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②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- 용도 : 인지세 납부 - 금액 :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- 매수 : 1매 - 성명/주민등록번호/연락처 기재 ③ 결제(현금납부만 가능) ④ 전자수입인지 발급 ⑤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

- 계약체결 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여야 하며,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하는 것은 납세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.
-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 시 "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"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·날인을 한 때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여러 회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매 시마다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